
Policy and Law Report _Vol.12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3.14.~ 2022.03.20) -

March 21,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는 이음5G (5G 특화망)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3개 실증사업으로, '22년 480억 원을 투입하여 11개 이음5G 융합서비스를 구축 지원할 계획임 공공분야에서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의 7개(지정공모 5개, 자유공모 2개)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4개(지정공모 4개)의 다양한 분야에 5G가 적용되어 디지털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모바일 엣지컴퓨팅 (MEC, Mobile Edge Computing: 통신망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로, 5G의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융합서비스로 구현 <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사업 개요 > <table><tr><th>사업명</th><th>예산</th><th>지원 내용</th><th>비고</th></tr><tr><td>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적용</td><td>400억원</td><td>공공의료, 물류, 안전, 항공, 에너지 + 자유공모 2개 (분야별 55억원 내외)</td><td>공공</td></tr><tr><td>5G B2B 서비스 활성화</td><td>40억원</td><td>제조, 민간의료 (분야별 19억원 내외)</td><td rowspan="2">민간</td></tr><tr><td>28GHz 산업융합 기반조성</td><td>40억원</td><td>실감문화, 실감교육 (분야별 18억원 내외)</td></tr></table>	사업명	예산	지원 내용	비고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적용	400억원	공공의료, 물류, 안전, 항공, 에너지 + 자유공모 2개 (분야별 55억원 내외)	공공	5G B2B 서비스 활성화	40억원	제조, 민간의료 (분야별 19억원 내외)	민간	28GHz 산업융합 기반조성	40억원	실감문화, 실감교육 (분야별 18억원 내외)	2022-03-15
사업명	예산	지원 내용	비고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적용	400억원	공공의료, 물류, 안전, 항공, 에너지 + 자유공모 2개 (분야별 55억원 내외)	공공														
5G B2B 서비스 활성화	40억원	제조, 민간의료 (분야별 19억원 내외)	민간														
28GHz 산업융합 기반조성	40억원	실감문화, 실감교육 (분야별 18억원 내외)															
산업통상 자원부	• 화학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발전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화학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100여명이 참여하는 '화학산업 포럼' 출범식을 개최함 현재 화학산업은 범용제품의 공급과잉 우려,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 부담, 원료 수급환경 악화,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등으로, 관련 기업들의 기존 영위 사업이 전방위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석유화학', '플라스틱', '정밀화학', '공급망', '인프라'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여 3개월간 포럼 운영 예정 ② 정밀화학분과는 아직도 선진국에 의존적인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에너지 등의 전방산업의 미래 핵심소재 지원방안을 찾고, 공급망·인프라분과는 공급망의 안정화방안과 기업투자에 애로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 등을 찾아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	2022-03-15															

부처	내용	일시
	③ 석유화학분과는 CO2 감축을 위한 원료·연료를 대체하고, 공정전환 등 논의 ④ 플라스틱분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업체들의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도입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성화 등의 지원방안 마련 예정	
보건 복지부	•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및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간담회」도 병행 개최하여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 강화 기반 구축 - 삼바, SKBS, 셀트리온 등 중소 백신기업 대상 시험검사 관련 지원, 컨설팅과 자문 실시 - '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강화 협의체' 운영 및 참여기관·지원 범위 확대 추진 ② 백신 소부장 대·중소 상생협력 지속 확산 - 백신 핵심 원부자재·장비 국산화 성공사례 창출 → 대기업 납품 → 상생협력 확산 - '백신·원부자재·장비 대중소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 확산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 확대 ③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강화 - 위탁 기업 애로사항 및 추진상황 지속 모니터링 →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강구 - 백신관련 기업 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온라인 설명회 개최 ④ 아미코젠, 국내 최초로 배지 양산 본격 착수 - 인천 송도에 GMP급 배지 생산공장 건설 투자(총 610억 원, '23.3월 준공 예정)	2022-03-16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3.18. 시행)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프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프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 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2-03-18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3.18. 시행)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업무연락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연락사무소의 명칭, 직원 현황 및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의 현황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외국법인이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를 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법인이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3-18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7.1. 시행 예정) 지정거래소가 주권 등의 매매 관련 사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는 경우 주권의 종목명, 수량 외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2-03-1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u>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u>」(2022.3.18. 시행)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면세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범위를 확대하며,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3-18
	• 「<u>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u>」(2022.3.18. 시행) 미납세 주류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 신청과 주정 실수요자증명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022-03-18
고용노동부	• 「<u>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u>」(2022.7.1. 시행 예정)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2-03-15
국토교통부	• 「<u>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u>」(2022.3.17. 시행)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 대상 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941호, 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공포, 3. 17.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직권 철거 시 건축주에게 송부하는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2-03-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해양수산부	• <u>「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9.16. 시행 예정)</u>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를 산정할 때 산정기간을 '최근 1년간의 위반행위 횟수'에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 횟수'로 범위를 넓히고,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입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2022-03-15
방송통신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3.15. 시행)</u>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451호, 2021. 9. 14. 공포, 2022. 3. 15. 시행)됨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을 앱 마켓사업자의 매출액 등 재무 현황과 결제수수료 등 결제 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행위로 정한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의 유형을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앱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상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022-03-15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방부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2.3. 공포, 5.4. 시행 예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 (안 제21조의2) -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 ②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사유 확대 (안 제27조) - 시범획득 사업 등을 통해 軍內 활용성이 확인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일반 획득절차와는 차별화된 절차 적용 필요성 대두 - 또한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반면,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효율성 내재 -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중복된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③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 (안 제71조) -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는 우주환경의 특수성 고려 시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형상 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 업무와 검사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마련 - 기관의 기술 역량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3/17(목)~4/1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방부(전력정책과)로 제출	2022-03-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규 자동차용 타이어는 동일한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신고와 「자동차관리법」의 자기인증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용 타이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확인신고 면제사항을 신설하고 면제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관리법」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안전확인신고 면제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② 안전확인신고 면제사항에 대해 면제범위(전부면제)를 정함 –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신고 전부 면제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호 내용추가) ※ 의견 제시기간 : 3/14(월)~4/2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로 제출	2022-03-14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60호, 2021. 12. 28. 공포)됨에 따라, 법 조문 신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인용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공장등록 증명서 발급, 임대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입주관리 요령 공고 등의 실질적 업무처리 기관을 법령상 업무 위임·위탁기관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안 제18조의3제1항, 제26조제4항, 제30조제4항제2호, 별표 제2호나목2), 3)) ② 권한 위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사무처리 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제4항·제7항·제8항·제11항) ※ 의견 제시기간 : 3/16(수)~4/6(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로 제출	2022-03-1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순환자원 인정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복수의 신청인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신청서 일괄 제출 및 해당 신청서의 일괄접수·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순환자원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순환자원 인정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순환자원 인정 신청대상을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확대하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명확화 (안 제3조) ②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신청이 소속된 법인·단체가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를 접수·처리할 수 있게 개선 (안 제4조 및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의견 제시기간 : 3/15(화)~4/4(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	2022-03-1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최신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촉매제(요소수)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임 최근 국제적 요소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촉매제 수급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등을 통해 촉매제 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촉매제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 고시 종료 이후 안정적인 촉매제 수급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촉매제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거래내용'을 구체화 (안 제131조제1항제10호)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거래내용(재고내용, 판매가격 등을 포함한다)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보고 체계를 구축 (안 제131조제4항)	2022-03-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의견 제시기간 : 3/18(금)~3/24(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교통환경과)로 제출	
국토 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제18823호, 공포: 2022.2.3., 시행: 2022.8.4.)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4조의9 신설) -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로 규정 -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마련 ※ 의견 제시기간 : 3/14(월)~4/2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로 제출	2022-03-14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07.21.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해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금액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료기기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제도의 도입 (안 제12조의5, 제12조의6 신설) -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07.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로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사망, 부상, 후유장애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규정함 -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보험 가입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견 제시기간 : 3/17(목)~4/26(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	2022-03-1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u>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0인)</u>」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현행법은 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변동이 없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1년 대비 현재 3배 가량 증가한 점과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보호한도를 상향조정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보험금의 한도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32조제2항 후단 신설)	2022-03-16
기획재정 위원회	•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여전히 공사비 내역서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및 그 밖에 주무관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주무관청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51조의3)	2022-03-1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0인)</u>」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작년 5월초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의 중단과 같이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3조)	2022-03-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손실에 대한 보상주체도 사업시행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광물 탐사 등을 위한 시추작업을 통해 생성되는 암추(탐사지역의 지질 구조, 암석 분포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암석 샘플)를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탐사 자료의 확보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광산보안법」에 따라 제출하는 광산보안도와 유사한 갱내실측도 등의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광업권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탐사권 및 채굴권을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타인이 행사한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광업권 취소 등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4조) ② 갱내 실측도 및 광업부 제출의무를 삭제함 (제84조 및 제104조제2항제2호 삭제) ③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86조의2 및 제104조제1항제2호 신설) ④ 탐사권 및 채굴권을 상속, 양도, 체납처분 등의 경우 외에 타인이 행사하게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함 (안 제101조제1항제1의2호 및 제102조제1의2호 신설)	2022-03-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u>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재건축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항목 중 일부, 안전진단 제외대상 및 안전진단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불량건축물이나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의 경우 그 요건 및 기준 등에 따라 재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재건축 가능 시점 등이 달라져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과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야 함 한편,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을 안전진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진 및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진단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를 현행보다 낮춤으로써 오래된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함 (안 제2조제3호라목) ②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제1호~제3호 신설) ③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안 제12조제6항 신설) ④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제6항제2호 후단)	2022-03-1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20(일) ~ 3/24(목)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개최 -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각국 의회의 기후행동 촉구	
	3/25(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1호 발간	
국회도서관	3/21(월)	「팩트북」 제93호 발간 - 주요국의 국가전략	
	3/22(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8호 발간 -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	
	3/24(목)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5호 발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개 및 전망 등	
	3/24(목)	「국외 현안리포트」 - 디지털화 시대 유럽의 문화예술 지원대책 동향	
	3/24(목)	「현안, 외국에선?」 제32호 발간 -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LA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처	주중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발간 - 탄소중립에 따른 발전부문 에너지세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입법조사처	3/21(월)	「이슈와논점」 발간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정책 및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2(화) 10:00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김영식, 이영,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2(화) 10:00	2022 부동산 입법 포럼 - 제로에너지건축 시대에 따른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송석준 의원실, 아주경제신문	켄싱턴호텔 15층
3/22(화) 13:30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의원실 외	의원회관 3세미나실
3/23(수) 07:30	한일 콘텐츠 교류의 확장 가능성과 OTT 시장의 기회	김진표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3/23(수) 10:00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실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2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18(금)	「해의의회 포커스」 제80호 발간	
	3/18(금)	「헌법과 법제」 제16호 발간 - 행정형벌 규정의 헌법상 쟁점과 법제적 시사점	
국회도서관	3/15(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7호 발간 -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	
예산정책처	주중	「NABO Focus」 제42호 발간 -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16(수) 13:30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의원실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